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박성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1

발의연월일 : 2026. 10. 30.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1명)
찬 성 자 : 신정태・안종숙・조희옥・정민우・이슬기・하서영 의원(총6명)

1.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와 기존 가로수 보전을 위한 부서 간 사전협의를 명문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절차와 연차별 가로수계획, 가로수 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 구민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4조)

다. 사업계획 단계의 가로수 조성·관리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안 제5~6조)

라. 가로수 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구민참여 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로수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도로의 신설·변경, 시설물 설치·변경 등 개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때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고,

보행그늘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전협의)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도로의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업 및 인·허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계획 수립·검토 단계에서 가로수 조성·관리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확장·구조 변경(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가로수 식재공간의 확보 또는 기존 가로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의 신규 포장 또는 포장 교체
3.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의 도로시설물의 설치·변경
4.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② 가로수 조성·관리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서 해당 사업계획에 가로수 식재 및 기존 가로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 기존 가로수의 현황, 수종 및 식재 위치의 적정성, 식재공간과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필요한 가로수의 식재 또는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식재공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및 인·허가 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가로수에 대하여 노선별·수종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하여 식재공간 및 토양환경 개선, 보호틀·보호덮개 등 관리시설물의 정비,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구민참여 사업)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등 위험요인의 신고
4. 사고나 고의적 행위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그 밖에 가로수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구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8">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상호)</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소(소재지)</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사업대상</td><td>가로수 위치</td><td colspan="6"></td></tr>
<tr><td>수 종</td><td></td><td>규격</td><td colspan="2">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td><td>수량</td><td>본</td></tr>
<tr><td>기 타</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작 업 방 법</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 업 기 간</td><td colspan="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td></tr>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8">※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8">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상호)</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소(소재지)</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대상</td><td>가로수 위치</td><td colspan="6"></td></tr>
<tr><td>수 종</td><td colspan="2"></td><td>규격</td><td>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td><td>수량</td><td>본</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작 업 방 법</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작 업 기 간</td><td colspan="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td></tr>
<tr><td colspan="2">승 인 조 건</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부담금</td><td>금액</td><td colspan="6">금 원정(₩)</td></tr>
<tr><td>납부기간</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직인</td></tr>
</table>

[붙임]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박성준 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박성준	박성준	신정훈	
		안종욱	
		조희욱	조희욱
		정미옥	정미옥
		이승기	
		하서영	